

[]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특정소방 대상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구산보건지소(구산데이케어센터) 소재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3길 29-7		

점검기간	2024년 11월 28일 ~ 2024년 11월 28일 (총 점검일수 : 1일)
------	---

점검자	[] 관계인 (성명: , 전화번호:)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 전화번호:)
	[√] 소방시설관리업자 (업체명: ㈜드림방재 , 전화번호: 02-376-3765)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관계인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구분	성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점검참여일(기간)
주된 기술인력	김 광 춘	소방시설관리사	제 2005-35 호	2024.11.28.(1일)
보조 기술인력	이 시 현	소방기술인정자격	2015-01-01138L	2024.11.28.(1일)
보조 기술인력	신 대 현	소방설비산업기사	10201013416L	2024.11.28.(1일)
보조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 · 관계인:

김광록 (서명 또는 인)

관계인 · 은평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
관계인이 제출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유의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8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